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인증·인정 개요	인증·인정 번호		
		인증 품목 및 용도(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경우)	보유 기법 및 생산참여 품목(전통 석재제품 인정의 경우)	
	재발급 사유 []분실·훼손 []기재사항 변경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인증서·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